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3
----------	-----

2022. 1. 26.(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월 4일

나.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월 19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제13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택배 기사 등은 인력 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15)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그 내용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1.0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1.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12.29.
경기도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3.16.
충청남도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경상남도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1.11.04.
전라북도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08.13.
전라남도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2021.05.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20.12.31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제3호에서 정의한 “재난”, “필수업무”, “필수업무종사자”는 법률 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음
 - 재난의 범위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태풍·홍수·대설·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 등 광범위한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등의 보호 의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였음
- **안 제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원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대응해야 하는 재난의 유형이 매우 광범위하고 재난 발생시기와 내용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재난발생 시 그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안전을 위한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지원은 감염 및 재해위험에 노출된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심리 상담 등 정신적 치료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법률 제9조16) 및 제10조17)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1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14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1.11.19.시행)이 제정되었음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7)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또한, 본 조례안이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조속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53
----------	-----------

제안연월일 : 2022년 1월 19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회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2. (생략)</p> <p>3. <u>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u></p> <p>4.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u></p> <p>4.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

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사 유

- 본 조례는 충북지역 필수노동자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필수 업무의 범위는 조례 제정 이후 심의·결정되고, 사업비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 사업과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